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성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9월 10일

발 의 자 : 이광성, 김용석, 장상기, 김정환,
김경영, 이광호, 문장길, 문영민,
최정순, 김생환, 김기덕, 김제리,
송명화, 유정희, 송정빈, 김태수,
황인구, 경만선, 김광수, 박상구
의원(20명)

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 제25조제2항에서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된 재정 등의 지원은 시민·사업자·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6조에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와 통일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잘못된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정확하게 함.

2. 주요 골자

- 가.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를 현행의 사업자 외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제3호)

나. 잘못된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정확히 함(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자.”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마목의 경우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포함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)</p> <p>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제5조제3호의 사업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</p> <p>가. ~ 자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5조(준용규정) ①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재정운용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「서울특별시 재무 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6조(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. 다만, <u>마목의 경우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포함한다.</u></p> <p>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준용규정) ① ----- ----- 「<u>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</u>」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「<u>서울특별시 재무 회계 규칙</u>」 -----.</p>